



영국의 퇴직연금 신호등(traffic light) 체계 운영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연구

영국은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위법사항 발견 시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framework)를 운영함. 신호등 체계에 의한 검증결과, 연금자산과 각출금의 불법사용, 부적절한 기록관리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운영실패 등 적색위반 사항에 해당되면 보고의무자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할 보고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 시 민법에서 규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위반행위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며 기금형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수탁자책임 규정 내용 등에 기초해 위반사례를 등급화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퇴직연금운영관련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영국은 근로자의 수급권보 호를 위해 사용자, 연기금, 수탁자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의 위반 사항 발생 시 감독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framework)를 운영함¹⁾

- 영국은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제체계의 핵심으로 인식,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강화함²⁾
- 이를 위해 보고의무자들이 위반 사항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청색단계, 황색단계, 적색단계)를 운영함

■ 신호등 체계의 도입배경으로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로 근로자 이익에 반하는 이익 상충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감독할 시스템이 요구된 점 등임

- 이에 영국의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의무자, 위반 상황(위반등급), 보고의무 및 제재 등으

1) The Pensions Regulator(2017), "Guidance notes for regulatory code of practice", no. 1 등을 참조
 2) 퇴직연금제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의 범위가 넓고 복잡해 위법사항 발생 시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고, 보고된 정보는 연기금 감독활동에 이용함

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보고주체) 영국 감독규정에서는 사용자, 연기금, 수탁자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주체(대상자)로 설정함

- 보고대상 주체(보고의무대상자)에는 사용자, 연기금, 수탁자 이외에 기록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재정자문가, 컨설턴트 등도 포함됨
- 또한 보험계리사, 감사, 법률자문가, 펀드매니저 등 수탁자에 의해 지명된 특정 전문가 그룹도 보고의무 대상자로 간주함

■ (보고사항) 신호등 체계에 의한 검증이 청색·황색위반 사항이 아닌 적색위반 사항인 것으로 나타나면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분류되어 감독당국 보고를 의무화함³⁾

- 청색위반 사항은 중요한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가 필요 없지만, 황색위반 사항은 보고의무자가 감독 규정원칙 등을 판단해 보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⁴⁾
 - 부정행위와 무관한 위반행위, 경미한 수준의 위반, 수탁자의 일시적 활동정지에서 비롯된 위반 등은 청색위반 사항임
 -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수탁자에게 급여규모를 보고(청색위반 사항)했지만 그 원인이 운용자의 부적절한 시스템으로 판명되는 경우(적색위반 사항)는 황색위반 사항에 해당됨
- 반면 연기금 자산과 각출금의 불법사용, 형법위반, 부적절한 기록관리로 인한 운영실패 등은 적색위반 사항으로 보고의무화 사항임

〈표 1〉 신호등 체계별 위반 상황 및 보고의무 여부

구분	위반 상황	보고의무
청색	- 친인척관계인 제도에서 부정행위와 무관한 위반행위 - 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행정착오로서 적기 교정 - 경미한 수준의 위반, 수탁자의 일시적 활동정지에서 비롯된 위반 등	없음
황색	- 단기요인에 기인한 시스템오류(내부통제 결여의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존재) -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급여수준 보고(운용자의 부적절한 시스템이 주원인) - 부주의한 실수 및 자문(급여증액 시 자문 받지 않고 결정) 등	정황 고려 판단
적색	- 부정, 자산과 각출금의 불법사용, 형법위반 - 수탁자가 전문가문가 미지정, 수탁자가 사용자와 상의 없이 투자원칙 변경 - 부적절한 기록관리·통제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운영실패 등	있음

자료: The Pensions Regulator(2017)

3) 보고가 요구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범주가 2005년 이후 확대되고 보고의무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됨

4)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위반이 감독당국에게 상당히 중요한지 등을 고려(원인, 결과, 대응, 영향)하고, 감독규정원칙 적용, 필요 시 지침 등을 참고해 보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함

■ (보고의무) 영국 연금법에서는 보고의무가 기밀 유지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

- 감독당국은 수탁자가 1명 이상의 전문가, 기타 그룹과 함께 보고하는 집합보고(collective report)도 허용하며 보고형식은 감독당국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제도이름, 위반내용, 관련일자, DB형 사용자 이름, DC형 제도관리자 및 보고자 이름·직책 등은 최저 보고기준에 해당됨
- 연금법에서는 보고자의 보고의무가 기밀 유지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의무를 미이행 시 민법의 제재조치를 적용함

■ 이처럼 영국은 신호등 체계에 의해 퇴직연금 운영 전반의 위반 사항 등을 상시 감독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 시 퇴직연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수준인 반면⁵⁾, 영국은 시스템적으로 퇴직연금 이해관계자의 위반 사항 전반을 감독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감독 대상도 사업자가 특별이익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통지를 하였는지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위반행위 방지 감독시스템이 부재⁶⁾하며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영국처럼 신호등 체계를 활용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현행과 같은 계약형 제도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수탁자 책임 규정 내용 등을 기초로 위반정도를 등급화해 감독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수탁자 책임 및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만, 위반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판단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은 부재하기 때문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시 영국과 같이 별도의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위반행위를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형 제도에서는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영국과 같이 엄격한 위반행위 보고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kiri**

5) 골프장대, 선물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미납통지를 소홀히 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이데일리 2018. 3. 12)되는 등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도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6) 현재 연금감독 목적에서 퇴직연금 운영 전반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보고하거나 감독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